

## 성인인증담배자판기 설치 합법화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담배자판기 전면 철거안을 들고 나왔던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자동판매기에 의한 담배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므로, 청소년 흡연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그 제한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제한된 장소에서만 설치하되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서 그간 존폐위기에 까지 몰렸던 담배자동판매기는 그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관련 업계와 더불어 담배자판기 규제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본 협회에서는 이번 성인인증담배자판기 합법화 조치로 인해 담배자판기 산업이 새롭게 재도약할 기회가 마련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의 구절처럼 이제 합법적인 명분을 확보한 담배자판기는 공공장소 흡연구역이외의 외부 로케이션까지 대상 로케이션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성인인증담배자판기의 합법화를 위한 그간의 파란만장했던 과정과 이번 법률 개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성인인증장치 합법화에 이르기 까지

성인인증장치가 합법화되기 까지는 정말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쳤다. 담배자판기의 규제완화를 적극 부르짖는 산업계와 확대되는 금연분위기에 편승해 오히려 금연정책을 강화하려는 보건복지부 정책은 오랜 기간동안 평행선 같은 대립관계를 유지해 왔다.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의 백방의 노력은 번번이 보건복지부의 철옹성 같은 벽에 부딪쳐 좌절이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기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설치가

된 담배자판기마저도 전면 철거를 하겠다는 규제를 담은 안을 들고 나온 게 지난해 4월의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흡연 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제품들마저 전면철거 하는 규제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하며 본격적인 입법추진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던 것.

이에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는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흡연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자율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예 담배자판기를 뿌리 채 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만능주의적 발상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부당한 처사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적인 저지 대응을 진행했었다.

보건복지부의 공고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1, 2차 심의를 거친 후 지난해 9월 27일 본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기존 자판기 철거는 명백히 영업활동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토록 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공공 이용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 담배자판기를 설치금지 및 철거규제하는 안에 대해 철회권고를 내리게 된 것은 산업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함에 힘입은 바 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철회권고의 주된 이유로 우선 기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철거는 재산권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 내에서 마저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과도하며 흡연자의 권익보호 역시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 이용통제 가능한 흡연구역에 한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토록 한 현행규정의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지 얼마 후 뜻하지 않은 돌발 변수가 나왔다. 입법기관인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한 청소년의 담배 구입경로를 차단함과 아울러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자동판매기 철폐안을 입법 추진하기에 이르렀던 것.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에서는 또 다른 담배자판기 철폐 입법을 추진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만큼 금연정책은 여론의 힘을 얻어 큰 힘을 받고 있었고, 애꿎은 담배자판기 만이 동네북이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아이러니컬한 상황은 규제개혁위원의 결정과 새로운 입법 추진이 서로간의 의견조율이 없이 별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현행 관련법 개정안을 철회토록 결정한 것 이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새로운 입법사항으로 담배자판기 규제안을 포함시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입법추진이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성인인증담배자판기의 존재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담배자판기 규제 안이 나오기까지는 세계적인 흐름인 성인인증담배자판기에 대해 인식이 부재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 청소년 이용을 차단하는 현실적인 방





법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려되지 않았다. 이보다는 오히려 '빈대 한 마리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식'으로 한국 내에서는 아예 담배자판기를 사라지게 만들려는 초강력 규제 안에 산업계는 당혹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협회와 관련 업체에서는 성인인증담배자판기의 존재가치를 알리고 담배자판기 철거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작업에 돌입했다. 기술로서 위해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있어 무조건적인 규제는 민주사회에 있어 명분과 타당성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일방통행 입법임을 강조했다. 또 기존에 설치된 자판기마저 철거를 한다면 사유재산 침해라는 위헌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 점에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인드는 조금씩 움직였다. 산업계의 주장대로 성인인증담배자판기의 존재와 활용가치를 인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지난 2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검토되던 이 안건은 점차 성인인증담배자판기의 필요성과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갔다.

그러던 중 결정적으로 산업계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지난 5월 21일 WHO의 담배규제협약 채택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6차 총회에서 담배의 효과적인 통제와 국제협력력을 담은 담배규제협약 결정에 있어 담배자판기에 미성년자 접근 금지 시스템 채택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포함시켰다. 이같은 WHO의 결정은 담배자판기가 어떻게 사회적 위해요인에 대처하는 지, 세계적인 흐름을 인정한 현명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WHO 담배규제협약은 세계 40개국 이상이 비준을 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난 6월 24일 세계 40여 개국 정부승인에 따라 이미 발효가 된 상태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올해 안에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서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WHO의 미성년자의 담배자판기 접근 금지 시스템 채택은 성인인증담배자판기의 인정에 있어 천군만마 같은 힘을 실어 주었다. 세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담배규

제기본협약에 거스르는 전근대적인 입법을 우리나라만 유독 고집할 이유가 없다.

산업계의 주장과 세계적인 추세, WHO 결정 등의 요인이 지난 6월에 있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었다.

결국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판매기에 의한 담배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므로, 청소년 흡연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그 제한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제한된 장소에서만 설치하되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결정에 있어선 담배자판기 운영자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관련업체의 반발과 권리 침해 문제, 성인인증장치의 대안 시스템으로서 인정 등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 법률 개정의 세부 내용

이번 결정을 반영한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은 제9조 제 3항이 다음과 같이 신설되게 된다.

<기존 2항>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3항>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 할 수 있는 담배자동판매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처럼 현행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로케이션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현재 설치가 된 담배자동판매기는 물론 신규설치가 될 담배자판기들은 성인인증장치를 채택해야 한다.

이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종전규정

이 적용되게 된다.

이제 담배자판기는 성인인증장치가 옵션이 아니라 필수 사항으로 채택의무화가 법적으로 강제되게 된 것이다.

### 합법화 이후의 시장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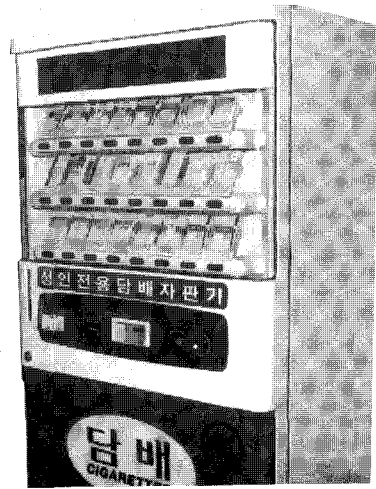
이같은 성인인증담배자판기의 합법화는 일단 철거 위기에 놓였던 담배자판기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지켜냈는데 의의가 크다. 사회적 금연 분위기가 악재로 작용,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있던 담배자동판매기는 이제 사회적 위해요인을 제거하고堂堂히 세상에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그 누구도 담배자판기의 철거 주창할 수 없게 되었으며, 여론 역시도 담배자동판매기를 적대시할 이유가 사라졌다.

이러한 담배자동판매기의 합법화는 관련 산업이 한껏 도약할 수 있는 기본토양을 제공해 주게 된다. 그간 법적인 문제로 신규전개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담배자동판매기 산업은 새로운 시장창출에 대한 설레는 기대를 숨길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우선적으로 기대되는 수요는 기 설치된 담배자판기에 대한 교체수요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담배자판기는 4000대~5000대선으로 추정된다. 이들 자판기는 1년 이내에 신규 성인인증담배자판기로 교체가 되거나, 기존 장비에 인증시스템을 장착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설치 운영되는 자판기들이 대부분 노후된 기종들이기 때문에 신규교체 물량이 대부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장은 교체수요에 의존하겠지만 신규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도 기대가 된다. 그간 법적인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규설치 수요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합법화 조치로 인해 현행 담배자판기가 설치 가능한 로케이션에 있어서는 신규수요가 촉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는 담배자판기가 음지로만 숨어들 까닭이 없어진 상황에서 공공장소 흡연구역,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등



에 있어서는堂堂하게 시장전개가 모색할 수가 있다. 더욱이 최근의 금연 로케이션 확산은 담배자판기의 존재 가치를 더욱堂堂하게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금연 로케이션의 확산은 흡연장소와 비흡연 장소의 구분을 더욱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흡연구역에 있어서는 담배자판기의 존재가치가 한껏 높아 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 전면 규제완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

이번 성인인증담배자판기의 합법화 조치로 인해 시장은 새롭게 재도약할 전기를 맞았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관련산업은 이제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가지고 시장 활성화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갈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현재의 성인인증자판기 합법화는 공공장소 흡연 구역, 청소년 출입 금지구역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폭발적인 시장 확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일부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시장 활성화가 기대될 뿐이지 좀더 큰 시장을 향한 기대를 갖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성인인증담배자판기의 전면 로케이션 자유화이다. 과거 청소년 흡연문제로 빼앗겼던 아웃도어 로케이션까지 전면 자유화되는 그때가 온다면 담배자판기 시장은 시장 특수의 날개를 달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아웃도어 로케이션까지의 성인인증담배자  
판기의 자율화까지는 많은 난제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금연구역 확산 추세와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을 한다. 아무리 청소년 이용 방지 시스템을 가진  
담배자판기라 할지라도 대상 로케이션이 확대되는 것은  
또 다른 침해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담배자판기에 설치 규제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마당에 무조건적으로 외부설치 규제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인인증담배자판기에 대해  
합법성과 명분이 인정된 마당에, 외부 로케이션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을 별로 없다.

외부 로케이션의 확대는 기존 유인담배판매 수단을 대  
체하거나 병행하는 측면으로서 담배자판기 역할이 추가  
되지, 흡연율을 크게 증가시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  
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은 해외사례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일본, 유  
럽등지에 있어 성인인증 담배자판기의 설치 범위에 대  
해 달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외부 로케이션 규제완화에 대한 명분과 타당성  
은 충분하다. 금연운동의 강화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산업계가 힘을 보  
아 외부 로케이션 규제완화를 적극 진행해 나간다면 '계  
란으로 바위 치기' 식의 불가능한 사안이 결코 아니다.

잃어버렸던 담배자판기의 진정한 생존권 확보는 외부  
로케이션까지 자유화가 됐을 때이다.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외부로케이션 규제완화를 위해 산업계는 자세를 새  
롭게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규제완화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산업계의 당연한 권리임을 인식해야  
한다.

서팡이 비친 담배자판기의 앞날은 또 다른 도전을 우리  
에게 요구하고 있다. ▣

## 國民健康增進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修正案

제안년월일 : 2003. 6.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

자동판매기에 의한 담배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므로, 청소년 흡연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그 제한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제한된 장소에서만 설치하되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 國民健康增進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國民健康增進法中改正法律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배자동판매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안 부칙 제2항중 “1월”을 “1년”으로 한다.